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부 제출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 등 시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“보고”하도록 하던 것을 “제출”하도록 함(안 제72조의2제1항부터 3항까지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